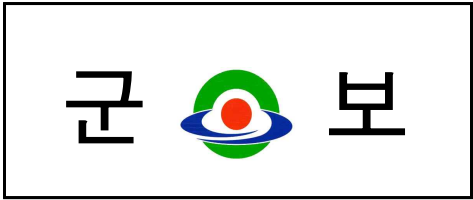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16호 2025. 5. 29.(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86호)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87호)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88호)

규 칙

-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3호)

훈 령

-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0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6호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의무·우대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세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제41조제1항)
 - (당초) 세액 1천만원 이하인 사건 → (변경) 2천만원 이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7호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단독세대			
	☐ 다문화가족		☐ 기타()			
지원시설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을 통한 주택 화재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 추가 신설 (제4조제3항)
 -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8호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중 “65세”를 “50세”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중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및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연령 확대(제2조)

- 65세 이상 예천군민 → 50세 이상 예천군민

나. 지원거부 근거 마련(제8조)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3호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기재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다.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1. 청구·신청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 2.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매출액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첨(뒷면)

신청인(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 2.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 법인의 매출액과 자산가액	수수료 없음
---------------	---	-----------

- | 구분 | 행정정보명 | 비고 |
|----|------------------|--------|
| 개인 | 소득금액증명 | |
| 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영리 법인 |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비영리 법인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개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관련 상 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 확대 사항 추가
 - 개인 재산, 종합소득금액 확인 시 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
 - 종전까지는 개인만 가능했으나,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에 대하여 선정대리인 신청 허용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완화 :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서 제출의무 삭제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70호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 초과하여”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민사합의부 사건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사단독, 행정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②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하거나 소송사건 중 중요사안,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사건 수임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수임변호사의 직무) 수임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변론 및 변론내용 통보
3. 지정된 선고기일 통보
4. 패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제출
5.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통보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 중인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이유

○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물가 및 수임료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기준 특례 상한 규정 삭제(안 제6조)

○ (현행)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정)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 및 의무 조항 마련(안 제7조~안 제8조)

다. 소송 물가액에 따른 본안사건 소송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1)

민사소송 본안사건 소송물가액		착수금		비고
		현행	개정	
1천만원 미만		5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20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소송물가액 범위 통합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만원 이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0만원 이내	현행과 같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만원 이내	〃	
5억원 이상		500만원 이내	〃	